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10년의 회고

강승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2005년 1월 <국어기본법>이 통과되고 7월에 시행령이 발표됨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77년 재외 국민 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원¹⁾ 자격 부여에 대한 내용이 제도적으로 공포된 것은 2005년 7월 <국어기본법 시행령>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한국어 교원에 대한 자격 제도(제13조)’가 발표되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해 왔던 교원들에게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2005년은 꽤거를 이룬 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어떻게 그 법적 기능을 발휘하고 정착해 왔으며 학문 과정과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쳐 왔는지 평가해 보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발표 이후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1) 한국어 교원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살펴보려 한다.

2.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정착 과정

2.1.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공포 이전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은 정부 주도의 기관 운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한 교육 기관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배경에 기인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해 온 한국어 교원들의 자격을 규정하거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던 것이다. 국내 한국어 교육의 시작으로 보는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설립 당시는 물론이고 1984년까지도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원 자격은 대학의 관련 전공 학부 과정을 마친 학사 학위 소지자였다. 1985년 이후 그 자격을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어문 계열을 포함한 인문 사회 계열 전공자로서 석사 학위 소지자가 그 자격 조건이었다. 이런 자격 조건은 1980년대 중반에 이어²⁾ 1990년대에³⁾ 설립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강사 채용에 적용되어 왔다.⁴⁾ 2005년 이전까지는 다른 요건 없이 관련 전공 석사

2) 1980년대 중반에 설립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 프로그램(현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1986)),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88) 등이 있다.

3) 1990년대에는 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1990), 서강대학교 국제평생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199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한국어 과정(1991),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현 국제교육원(1992)),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한국어 과정(1994) 등이 있다.

4) 이러한 조건은 2015년 현재에도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자격

학위 소지자로 제한해 석사 학위 자격 이외에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교원들이 갖추어야 할 별도의 전문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1980년 중반의 국제적인 행사였던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로도 증가세는 지속되었고 1990년대 말을 거치면서 학습자 분포가 변했다. 2000년에는 한국어 교육 현장의 다양한 변화에 부응하고 당시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던 ‘세계화’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 분야의 전무후무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어 세계화’ 프로젝트였다. 이는 국내 한국어 교육 관련 학자, 연구자, 교수자를 한데 결집하여 연구를 수행한 큰 움직임이었고, 이후 5년간 지속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⁵⁾ 이 과제의 한 분과였던 교육 연수 분과의 과제들이 2005년 <국어기본법>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련되는 법 조항들을 입안하는 데 기초 연구로 반영되었다. 특히, “한국어 교사 자격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적 연구”⁶⁾는 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제도화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

2.2.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공포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관련 조항(제13

요건이기도 하다.

- 5)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하수)가 한국어의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어 해외 보급 사업으로서 기초 교육 자료 분과를 비롯하여 교육 연수 분과, 해외 보급 분과 등 12개 세부 과제로 수행한 대규모 과제이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 핵심 과제들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후에 다양한 형태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 6) 이 연구에는 과제 책임자로 민현식, 공동 연구원으로 최은규, 김제열, 이소영, 김정은 등이 참여하였다.

조, 제14조)이 공포, 시행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한국어 교원을 공식적·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외국인과 재외 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한국어 교원에게 자격을 주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민간에서 내부적으로 요구해 오던 비공식적 자격 요건이 제도권 내 공식적인 지위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한국어 교원의 자격 부여를 통해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어 교원의 자질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학이라는 학문적 정체성과 한국어 교육 실제와의 관련성 등 좀 더 합의되어야 할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를 말하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훈련과 양성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한 데에도 의의가 있다.

셋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한국어 교육 인력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유도 효과가 있다. 즉, 국내 한국어 교육 현장만이 아니라 국외 대학, 한글 학교,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식적이고 실제적인 과정이 필수임을 주지시키는 주의 환기의 기능을 하게 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3. 2010년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공포 이후 2006년부터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⁷⁾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집단의 지적 등을 통해 2010년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 세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전 자격 제도와 2010년 개정 자격 제도의 변경 내용으로는 첫째, 자격 부여 대상자 상세화, 둘째, 승급 요건의 강화, 셋째,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확대, 넷째, 외국 국적자에게 한국어 능력 인증 결과 요구, 다섯째,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및 심사위원회 규정 상세화 등을 들 수 있다 (김정숙 2011:48~51). 2005년 시행령 공포 이후 2006년부터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해 5년 가까이 시행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들은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규정의 내용을 상세화하고 실제 교육 현장의 경력 등을 인정해 주기 위한 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의 교육 능력을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현황과 문제점

3.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현황

2015년 현재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와 유형별 양성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다. 2006년부터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여 2015년 6월 현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2만 명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및 대학원 학위 과정의 양성 기관 수도 176개로 집계되었다. 176개의 유형별 기관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부 40개, 대학원 102개, 사이버 대학(원) 11개, 학점 은행제

7) 국립국어원에서 주도한 조현성 외(2008)의 연구가 있다.

[표 1]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 및 교원 양성 기관 현황(2015년 6월 기준)

구분	자격증 취득자 수	대학(원) 전공 학과	단기 양성 기관
2006년	868명	40곳	34곳
2007년	639명	-	-
2008년	842명	69곳	54곳
2009년	1,037명	-	-
2010년	2,157명	81곳	113곳
2011년	1,809명	95곳	130곳
2012년	2,336명	123곳	153곳
2013년	3,139명	145곳	159곳
2014년	4,566명	163곳	177곳
2015년	1,852명	176곳	185곳
누계	19,247명	176곳	185곳
비고	1급: 345명 2급: 12,335명 3급: 6,567명		

출처: 국립국어원 자료

23개이다. 이에 비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단기 양성 기관⁸⁾도 185곳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수의 증가에 따라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해당 상위 법과 기관 유형에 따른 자격 취득 절차와 승급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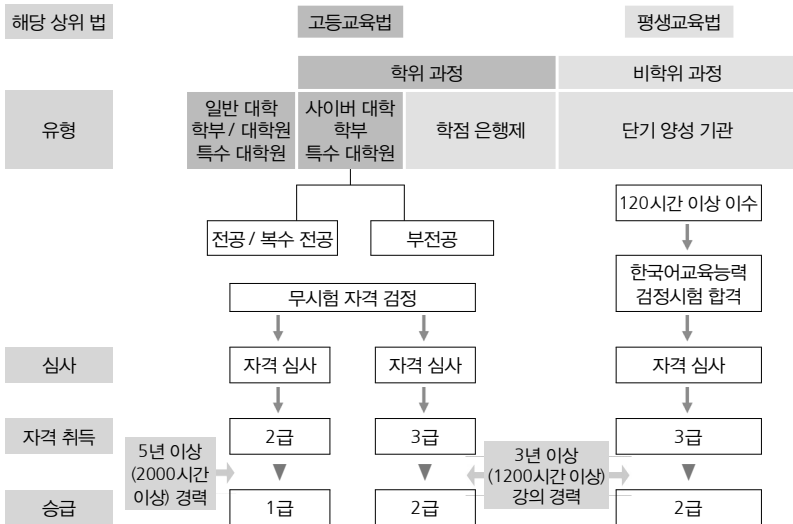
8)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민간, 공공 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 과정으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120시간의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과정을 말한다(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단기 양성 기관”이라 함) (국립국어원, 《2013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 2013:5).

[표 2]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수: 학위 과정(2015년 6월 기준)

구분	대학(원) 전공 학과					단기 양성 기관
	총계	유형별 과정 수				
		학부	대학원	사이버 대학(원)	학점 은행제	
2010년	81곳	16곳	54곳	5곳	6곳	113곳
2011년	95곳	17곳	65곳	6곳	7곳	130곳
2012년	123곳	23곳	80곳	8곳	12곳	153곳
2013년	145곳	30곳	88곳	9곳	18곳	159곳
2014년	162곳	35곳	96곳	10곳	22곳	177곳
2015년	176곳	40곳	102곳	11곳	23곳	185곳
누계	176곳	40곳	102곳	11곳	23곳	185곳

출처: 국립국어원 자료

[그림 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상위 법, 유형에 따른 자격 취득 절차 및 승급



3.1.1.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과정의 유형

①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에 의한 구분

우선 기관 유형 혹은 과정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위 과정은 일반 대학 학부/대학원, 특수 대학원, 사이버 대학 학부/특수 대학원, 학점 은행제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비학위 과정은 단기 양성 기관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학위 과정은 시험 과정 없이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충족 여부만을 심사하여 해당급의 자격을 부여한다. 비학위 과정은 대학 부설 단기 양성 기관에서 120시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심사 과정을 거쳐 3급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시험(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응시 절차의 유무에 있다.

②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구분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의 구분은 해당 상위 법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일반 대학 학부/대학원, 특수 대학원과 사이버 대학 학부, 사이버 대학 특수 대학원은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기관 유형이며, 학위 과정의 학점 은행제와 비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단기 양성 기관의 과정은 평생교육법이 적용되는 기관 유형이다. 적용되는 해당 상위 법에 의한 구분에서 특이한 유형이 ‘학점 은행제’인데, 이것은 학위 과정이지만 고등교육법이 적용되지 않고 평생교육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학점 은행제는 다른 학위 과정과 달리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과정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교과목만을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세한 문제점은 다음의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취득) 방법, 즉 자격 심사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다.

3.1.2.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취득) 방법: 자격 심사⁹⁾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취득) 방법, 즉 심사 절차와 방법은 현재 2010년 제정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과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자격 심사 신청을 통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 심사에 관련되는 일반 기준은 2010년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¹⁰⁾ 등이다. 또한 학위 교육 과정이 해당 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전공(학과)은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전공 혹은 학과로 개설되어야 하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학과)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학부)에서 부전공 또는 연계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필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개인 자격 심사 시 기관의 교육 과정 및 교과목 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충족 여부를 심사하므로 개인 자격 심사 신청은 해당 기관의 교육 과정과 개설 교과목 등이 인정을 받은 상태라야 한다. 그러나 기관의

9) 이에 관련되는 내용은 ≪2013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였다.

10)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제13조 제1항 관련)(국립국어원, ≪2013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 2013:10).

영역	대학		대학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전공/복수 전공	부전공		
	2급	3급	2급	3급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교육 과정과 개설 교과목들이 인정을 받기만 하면 개인 심사 신청자가 취득한 학점 및 교과목만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3.2.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

윤소영 외(2011:3~4)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문제들은 첫째,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과 관련된 교과 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문제, 둘째, 비학위 과정 운영 기관의 교육 환경 및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 셋째, 설립된 비학위 과정 운영 기관의 관리 및 평가에 대한 부분, 넷째,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인력 활용 문제 등이다. 이 같은 문제들이 대부분 관련 전문가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현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을 자격 심사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¹¹⁾

3.2.1. '취득 학점 및 교과목 중심의 심사 절차'의 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취득) 방법, 즉 심사 절차는 '취득 학점 및 교과목 중심의 심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예비 교원이 수강한 교과목을 통해 취득한 학점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첫째, 교과목의 운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의 절차상 각 유형

11)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관련 부분은 이 글의 지면 관계상 별도의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자격 심사 절차와 방법의 측면에서 짚어 보고자 한다.

별 교육 기관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출된 강의 계획서는 모범 답안처럼 작성된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제출되는 사례도 있다. 실제 교육 기관의 강좌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지식적인 측면 못지않게 기술적인 측면의 훈련도 중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은 실제 현장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확보되기 어렵다. 특히 5명 역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육 실습’ 관련 과목의 운영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취득 학점 및 교과목 중심의 심사 과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정(assessment) 절차 없이 신청자의 취득 학점 및 교과목 중심으로 심사하는 원칙은 학위 과정 모든 유형에 적용된다. 이는 ‘학점 은행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점 은행제’는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일반 학위 과정과 달리 입법의 취지가 다른 평생교육법을 상위 법으로 하고 있는 학위 과정이다. ‘학점 은행제’는 학위 과정에 해당하지만 운영 방식이나 관리 형태가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대학(원) 등의 학위 과정과 다르다. 특정 학위 과정의 경우 해당 학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들을 기간에 관계 없이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며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평생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관리를 통해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교과목 운영은 대부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등 교육 기관(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나 평생 교육 기관을 통해 ‘학점 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나 똑같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은

행제를 선호하는 추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2.2. 승급 심사 기준의 문제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이후 2010년 개정 <국어기본법>에서 승급 심사 기준에 대해 2급 자격자가 1급으로 승급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 총 2,000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원 2급은 학위 과정에서 한국어 교원 3급을 취득하고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1,200시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을 경우와 비학위 과정에서 3급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000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을 승급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승급 요건의 강화는 2005년 시행령 이후 2010년 개정 시행령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누적된 경력 시간이 교육 능력에서 한 단계 향상된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무엇인가 승급을 위한 요건을 필수로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교수 행위에 대한 검증 등 승급 취득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4. 개선 방안

위에서 현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에 제안하려는 것은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기보다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다.

4.1. 기관 및 교육 과정 인증제 도입

지금의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미 한국어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간의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과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신청자들을 현재의 제도로 관리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 자격 심사 형태로 진행되는 현행 제도를 전격적으로 전환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해당 교육 기관에 개설된 과정을 심사하고 개설 전공(학과)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 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를 좀 더 확대 운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중등 교사 양성 기관에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정원을 승인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로써 해당 기관에 적절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해 기관을 인증하고 그 기관에 자격 취득의 정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양성 기관 유형별 인증 평가의 탄력적 적용 등 양성 기관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한 선도 기능이 구현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4.2 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방안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에 제시된 과목의 영역 중 5영역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육 실습’ 운영은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과정은 우리나라 중등 교사 자격 취득 과정과 비교할 때 실습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등 교사 자격 취득의 ‘교육 실습’은 한 달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한국어 교육 실습’은 한 과목으로 한 학기(32~48시간) 운영되고 있다. 그것도 실습의 기회는 8~10시간 참관과 1~2시간의 실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도 매우 양호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하고 실습 현장 없이 ‘한국어 교육 실습’이 운영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비학위 과정은 부설(혹은 부속) 한국어 교육 기관이 없는 경우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어 교육 실습’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협력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전담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실습 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기관을 지정할 때는 기관에서 정규 프로그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감액의 혜택을 주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예비 교원(실습 학생)이 운영하는 수업이라는 것을 공지하여 별도의 한국어 교실로 운영해야 한다. 지정 기관에는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실습 교원이 있어야 하며, 위탁하는 기관에서 실습 과목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여 책임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4.3. 교원 재교육 방안

지금의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는 교원 양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승급에 관련되는 부분은 양성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연수 혹은 재교육에 해당한다. 현장의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내에 한국어 교원의 재교육 혹은 연수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이 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혜택으로 승급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 연수는 재외 한국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만 운영되어 왔다. 물론 해외 한국어 교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 관리와 지원 측면에서 재교육 혹은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 양성, 자격 부여, 질적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한층 더 높은 수준을 갖추게 된다고 본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승급 조건에 대한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경력 시간의 단순 누적보다는 일정 등급의 자격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갈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한국어 교원이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13), 《2013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 김덕신(2012), 한국어 교원 자격 승급자 연수에 대한 제언, 《언어학연구》 23, 한국중원언어학회, 13~30.
- 김정숙(201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변천과 그 개선 방안, 《새국어생활》 21권 3호, 국립국어원, 41~58.
- 김한빛나리(2011), 한국어 교원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국외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송향근(201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21권 3호, 국립국어원, 27~39.
- 송향근(2012)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5, 민족어문학회, 53~75.
- 윤소영·조현성·이미혜·최은규(201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상현(2015),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조태린(2012),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개선, 《언어와 문화》 8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75~293.
- 조현성·박영정·홍기원(2008),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